

IV-5 사망신고

1. 사망신고

외국인이 일본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에도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일본법률에 따라 시구정촌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망의 사실을 인지한 후로 7일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일본에서의 사망확인은 매우 명확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일본의 의사면허를 가진 의사 혹은 검찰외에는 할 수 없습니다.



의사에 의한 사망확인 후 의사가 작성하는 사망진단서를 받아 그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망지 혹은 신고인이 거주하는 시구정촌의 담당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사망신고서외에도 외국인등록증명서를 시구정촌에 반납하여 외국인등록을 말소합니다. 또 사망한 분의 본국에서의 수속을 진행합니다. 나라에 따라 수속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재일대사관이나 영사관 (부록IX-5 88 페이지) 에서 확인하여 주십시오.

2. 매장

인구가 밀집한 오사카부에서는 토장을 허가해 주는 묘지는 거의 없습니다. 종교나 관습상 화장이 아니라 토장을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묘지를 찾거나 본국으로의 유해이송에 필요할 경우에는 영사관 등 (부록IX-5 88 페이지) 에서 상담해 주십시오.